

---

**코로나19 손실보상  
약국이 알아야 할 모든 것**

---

2020.12.30

**대한약사회**

# CONTEXT

---

1

## 코로나19 손실 보상 대상

7일 이하 폐쇄 · 업무정지

8일 이상 폐쇄 · 업무정지

환자 발생 · 경유 사실 공개

환자 발생 · 경유로 인한 약사 자가격리

(1) 휴업으로 인한 경우

(2)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3) 폐쇄 · 업무정지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접수 및 진행절차

3

## 자주 묻는 질문

약국 영업손실 보상 기준

약국 종업원이 자가격리된 경우

2020년 신규 개설하여 2019년 자료가 없는 경우

약국의 소독 및 휴업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

## “코로나19 손실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또는 경우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와 확진 환자 동선 공개로 약국 정보가 공개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 손실보상 대상 ①

##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약국(7일 이하)

### (1) 개요

정부, 지자체로부터 확진자 발생 또는 경유에 관한 안내를 받고 방역지침에 따라 약국을 폐쇄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 손실보상 범위

보상금액 : 영업손실(1일 영업이익 + 1일 고정비용) x 약국 폐쇄 기간(일)

\* 제출서류 : 2019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영업손실 산정을 위해 필요

\* 고정비용 : 인건비, 건물 임대료, 관리비, 광고비, 감가상각비, 업무와 연관된 보험료 등

### (3) 유의사항

약국이 자체적으로 폐쇄, 휴업한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일시적 폐쇄 명령서 또는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만 해당)

법정공휴일(일요일, 국경일)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 7월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폐쇄된 경우 : 영업손실x 2일(일요일 제외)

# 폐쇄 · 업무정지 조치된 약국(8일 이상)

## (1) 개요

약국 폐쇄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장기간 폐쇄된 경우 약국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회복기간)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손실보상 범위

- 보상금액 : 영업손실(1일 영업이익+ 1일 고정비용) x 약국 폐쇄 기간(일)
- \* 제출서류 : 2019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영업손실 산정을 위해 필요
- 추가보상 : 회복기간(약국 폐쇄 기간 - 5일) 동안의 영업손실

## (3) 유의사항

회복기간은 폐쇄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산입하며 법정공휴일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총 기간을 최소 3일 ~최대 7일로 제한합니다.

(ex) 폐쇄 기간이 20일인 경우 회복기간은 15일(20-5)이 아닌 7일로 간주

## 환자 발생 · 경우 사실이 공개된 약국

### (1) 개요

정부,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 발표에 의해 환자 발생 또는 경우한 사실이 공개된 경우, 공개 후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 손실보상 범위

보상금액 : (작년 7월 영업이익) - (정보공개 후 7일간 총 매출)

\* 정보공개 당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실제 매출액 정보를 검토하여 산출합니다.

• 제출서류

: 포스 자료 또는 카드 매출전표(일별매출장), 청구프로그램 전산자료 -> 급여, 비급여, 일반의약품 매출 모두 파악

: 2019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작년 7월 영업이익 파악

### (3) 유의사항

정부, 지자체가 아닌 인터넷, 미디어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손실보상 대상 ④-1

---

## 약사가 자가격리되어 휴업한 경우

### (1) 개요

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가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되어 휴업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 손실보상 범위

- 보상금액 : 영업손실(1일 영업이익 + 1일 고정비용) x 약국 휴업 기간(일)
- 추가보상 : 약국 정보가 공개된 경우 7일간 발생한 매출손실

### (3) 유의사항

여행, 식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자가격리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약국 정보가 공개되었더라도 ‘휴업 기간’과 ‘정보공개 후 7일’의 기간이 겹치는 경우는 추가보상되지 않습니다.

(ex)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휴업하였고 15일에 처음 정보가 공개된 경우, 이로 인한 추가보상 X

## 약사가 자가격리되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 (1) 개요

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가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되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 손실보상 범위

- 보상금액 : 대체 약사 인건비 보상(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내역 제출 필요)
  - \*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내역(통장사본)
- 추가보상 : 약국 정보가 공개된 경우 7일간 발생한 매출손실

### (3) 유의사항

여행, 식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자가격리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약국 정보가 공개되었더라도 ‘휴업 기간’과 ‘정보공개 후 7일’의 기간이 겹치는 경우는 추가보상되지 않습니다.

(ex)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휴업하였고 18일에 처음 정보가 공개된 경우, 이로 인한 추가보상 X

# 약사가 자가격리되어 약국 폐쇄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1) 개요

약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일부 약사가 자가격리되어 영업 이익이 크게 감소한 약국은 개별 심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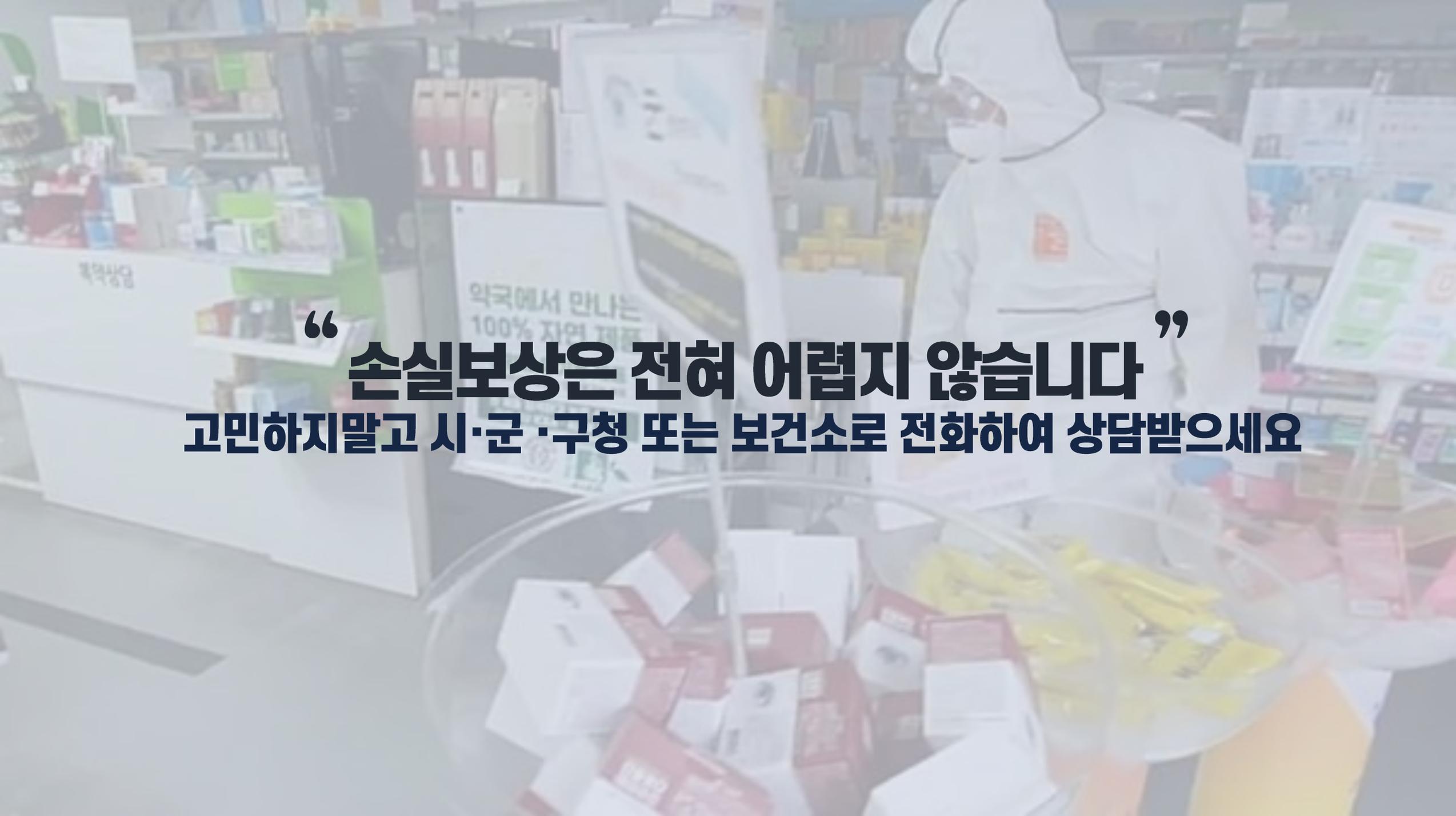
## (2) 손실보상 범위

○ 보상금액 : 약국별로 개별 심의를 통해 결정

## (3) 유의사항

격리된 약사의 비율이 높고, 매출 감소가 사실상 약국 폐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합니다.

(ex) 3명이 근무 중인 약국에 2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여 영업이익이 70% 이하로 감소한 경우



**“ 손실보상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  
**고민하지 말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세요**

#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제출서류

<b>손실보상청구서</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b>개인정보제공동의서</b> (시군구에서 제공)	<b>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b>
<b>소독 이행 근거</b> (보건소가 직접 소독한 경우는 제출 X)	<b>요양기관(약국) 확인서</b> (시군구에서 제공)	<b>영업 손실 근거</b> (2019년 표준재무제표) (세무사에게 자료 요청 필요)



시·군·구 (관청, 보건소 등)로 접수

## 접수 및 진행절차

### (0) 방역조치 확인

시군구 지자체로부터 방역 소독, 확진자 동선 공개에 의한 약국 정보 노출, 일시적 폐쇄 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이 이루어진 경우 명령서를, 자가격리된 경우 자가격리 통보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1) 청구서 작성

약국 소재 시군구 지자체(관청, 보건소 등)로 전화하여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서류를 전달받습니다.

손실보상청구서는 국가법령정보([www.law.go.kr/](http://www.law.go.kr/)) 페이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한 후 별지 제31호를 다운받아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2) 세무사무소에 2019년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자료 요청

세무사에게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신고 손익계산서)를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페이지에서 「민원증명 - 표준재무제표 증명」 을 통해 간단히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 접수 및 진행절차

### (4) 소독 이행 근거 준비

보건소가 직접 소독한 경우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독업체를 불러 소독한 경우 반드시 소독필증을 업체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5) 요양기관 확인서 준비

약국 소재 시군구 지자체(관청, 보건소 등)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6) 청구서 및 서류 접수

약국 소재 시군구 지자체(관청, 보건소 등)로 접수하면 심의, 사실 확인, 보상금액 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7)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약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 접수 및 진행절차(요약)



## Q1. 약국 영업손실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A

- ① 약국 폐쇄, 업무정지 : 영업손실 기준(2019년도 표준재무제표를 통해 산정)
- ② 약국 정보 공개 : 공개 후 7일간 매출 감소분(포스 자료, 청구 프로그램 자료를 통해 산정)
- ③ 약사 자가격리로 인한 휴업 : 영업손실 기준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를 통해 산정)
- ④ 약사 자가격리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 : 인건비(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 Q2. 2020년 개설하여 2019년도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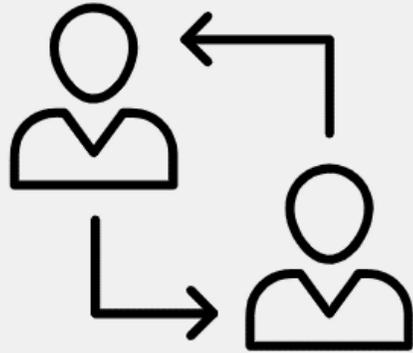
2019년도 국세청 신고 손익계산서(표준재무제표) 자료가 없는 약국의 경우 개업일로부터 지자체 조치로 인한 폐쇄일까지의 월별 매출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접수는 가능하므로 우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Q3. 약국 종업원이 자가격리된 경우 대체 인력 인건비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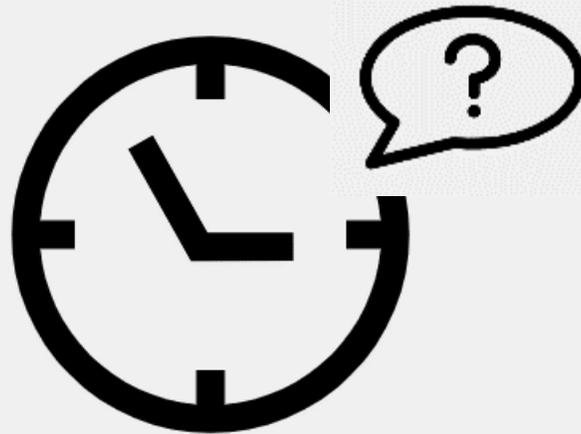
약국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대체 인력 인건비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휴업한 경우 휴업 기간 동안 지급해야하는 종업원의 인건비는 고정비용(2019년 재무제표)으로서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되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Q4. 약국 소독으로 인한 업무정지가 짧은 경우도 보상이 되나요?

A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정부, 지자체가 소독 및 휴업 명령을 한 경우에는, 시간과 관계 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 시간이 5시간 이내인 경우 0.5일 휴업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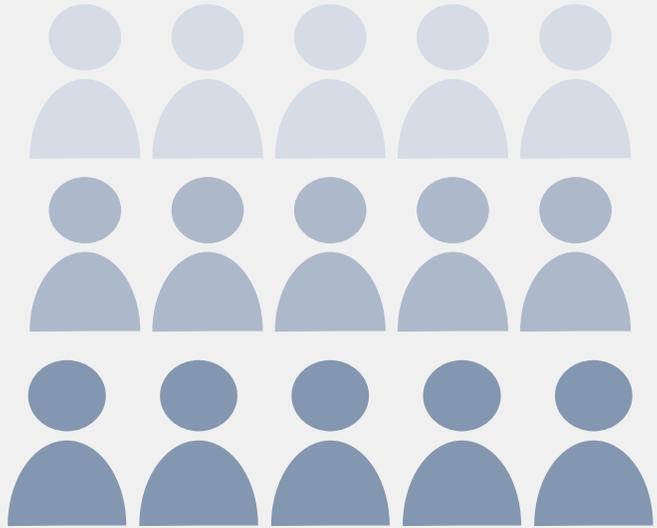


### Q5. 그래서, 결국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코로나19 피해 관련 문의 및 손실보상은 지자체마다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약국 소재 보건소로 전화해보시거나 담당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10.46%**  
(추정)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영향을 받은 약국은 최소 3,000개소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021.1.3. 서울지부 기준 2498개소)

그러나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을 받은 곳은 314곳에 불과합니다.

(2020.11.16 기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국민건강 증진에 헌신해 온 약국,  
모든 피해 약국이 입은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THANK YOU**

---